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53
----------	-------

발의연월일 : 2025. 9. 17.

발 의 자 : 이훈기 · 김문수 · 박지원
김승원 · 박해철 · 김남근
김 윤 · 이재관 · 이병진
이주희 · 황명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마약류의 유통이 증가하면서, 일상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후 환각 상태에서 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하지만 범죄를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감경해주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마약류 투약 후 살인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지만, 마약류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마약류 투약 후 범죄는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불법적으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살인, 강도, 강

간, 상해, 폭행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마약류 투약, 흡연 또는 섭취에 따른 2차 범죄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그 마약류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곤란한 상태에서 「형법」 제250조, 제252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4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제305조의3 및 제333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u> 」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그 마약류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곤란한 상태에서 「형법」 제250조, 제252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4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제305조의3 및 제333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